

학생활동안전관리규정

제 정 2018. 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및 총학생회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내·외 학생 집단활동 운영 시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, 안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대학본부, 단과대학, 학과, 학생회, 동아리 및 소모임 등이 주최하여 교내·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집단활동에 대해 적용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“집단활동”이라 함은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(O·T, 학교 및 학(부)과 교내·외 단체 행사)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- ②“인권침해 행위”라 함은 대학의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, 문자·언어적,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.
 1. 신체적 가해행위 : 폭력(구타)행위, 음주강요, 열차려(엎드려뺨쳐, 원산폭격, 앉았다 일어서기 등) 등을 가하는 행위
 2. 문자·언어적 가해행위 : 욕설, 인신공격, 신체·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,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
 3. 성적 가해행위 : 문자·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③“안전관리책임자”라 함은 집단활동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
- ④“안전관리”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·신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4조 (안전관리우선) 대학 및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려, 조치하여야 한다.

제5조 (안전관리 책임자의 의무 등) ①안전관리책임자는 교원, 직원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 하게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단체의 학생대표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할 수 있다.

- ②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10일전까지 대학생집단연수준수사항점검표[서식1]를 학생복지처 학생과 학생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제6조의 각 항,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,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④안전관리책임자는 집단 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,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조 (안전점검 범위) ①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
2.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, 인권침해예방교육 실시
3.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,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

4.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
2.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,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
3.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,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
4.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
 - 1)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
 - 2)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
 - 3)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행사당일 배차된 차량의 차량번호 일치여부 확인
 - 4) 버스 차종 및 연식(5년 이내), 승차정원 확인
 - 5) 배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 감지 측정
5. 행사(계약) 전 사전 답사
 - 1) 보험가입 여부,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확인
 - 2)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
 - 3)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
6.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 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대학생집단연수준수사항점검표(0000학년도)

항 목	확인	미확인	비고
1.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			
◦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			
-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,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확인			
- 보험 유효기간, 사고당 보험금액(1인당 보험금액), 보상범위 등 확인			
-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인지 확인			
- 계약조건으로 버스차종 및 연식(5년이내), 승차정원,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등 안전조건 적시			
- 당일 배차된 차량이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운전자 일치여부 확인 (음주포함)			
-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정상 작동,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 확인			
- 소화기 비치여부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의 위치여부 확인			
◦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			
- 차량 계약 시 배차된 차량 운전자의 적격 심사결과 제출			
2.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			
◦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(배상) 범위 등 확인			
- 대학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상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참가인원 대비 보상(배상) 규모 확인(* 우리학교 1인당 및 1사고당 최고한도 5백만원)			
◦ 기존 보험의 보상범위가 불충분할 시 행사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검토(여행자 보험,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)			
3. 행사(계약) 전(前) 답사			
◦ 보험가입 여부,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 확인			
◦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			
- 소방시설, 완강기, 대피로, 인근 소방서, 병원,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			
◦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확인			
4.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			
◦ 음주, 폭행 등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예방교육			
◦ 행사장의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			
- 행사장소 소화기 위치,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			
5. 필요시 교직원 동행			
◦ 학생들이 동행을 요청하거나,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교직원이 동행			
6. 예산 집행 내역 공개			
◦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는 회계 관리 내역 공개해 예산 집행·관리 투명화			
7. 기타			
◦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·버스등의 계약 연기, 취소를 결정			
◦ 멀미약, 소화제, 두통약 등 비상약 구비			
◦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 파악			
◦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, 비상연락망 체계 확인			
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.			
20 년 월 일			
학 과 명 :	인솔책임교수 :	(인)	
	학 부(과) 장 :	(인)	
	학 장 :	(인)	
학 생 복 지 처			